"전자 매입계산서" (세금계산서 아님-계산서 임)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

Q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
"전자 매입계산서" (세금계산서 아님-계산서 임) 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.
매입계산서 이다 보니 부가세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고, 법인세신고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.
참고로 당사가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모두 전자계산서로 국세청 전송은 완료된 상태입니다.

A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2월10일까지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한 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연도인 올해 2월10일까지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국제운송용역 영세 처리

Q 현재 당사에서는 포워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해외로부터 받을 때 각각 해외(업체)->국내(공항)->국내(회사창고) 운송비가 발생하는데, 포워더 업체에서 이 때 발생한 비용 중 공항도착 후 회사창고까지 오는 국내 운송비용을 영세율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. 업체에서 청구받은 그대로 처리해도 부가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. 만일 문제가 된다면, 해외(업체)=>국내(공항) 만 영세율 적용하고 국내(공항)=>국내(회사창고) 운송비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한 검토 바랍니다.

A 국제운송업체가 해외출발지부터 국내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, 포워더업체의 청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
차량렌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

Q 당사에서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렌트 하려고 합니다.
<사례1>
보증금 200만원, 월 렌트료 350만원
렌트기간: 22/01/17~22/02/17 (비용지급: 1/20)
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용 완료 후 2/17 반납 시점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,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문의 드립니다.
<사례2>
업체에서 차량 렌트 비용 중 50% 선수 요청, 나머지 비용 50%는 반납 시점에 지급 예정
렌트기간: 1/24~1/31 (선수금: 1/20일 지급, 잔금: 2/10 지급)
이 경우 하기 방법 중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.
- 선수금 세금계산서 + 잔금 세금계산서
or - 거래종료시점에 총 금액 세금계산서

A 일반적으로 용역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. 따라서 역무 완료시점인 2/17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데,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면 대금 수수시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선수금 지급일인 1/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선수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귀사가 질의하신 두가지 방법이 모두 세법상 적법한 방법이므로 선택 적용하시면 됩니다.

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

Q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홈텍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면세사업자라고 확인되는데,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.

A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